**<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 전남자친구 A

일시 : 2023.06.28 오전 8시(더 유력) 혹은 29 오전 8시

장소 : A의 집(오피스텔)

사건 요약 :

첫 번째 영상 - 6월 28일 성관계 중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후면카메라로 동영상 1회 촬영함. 촬영임을 깨달은 즉시 하지 말라고 손으로 핸드폰을 밀어냄. A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음. 성관계 후 저장된 영상 같이 확인함. 첫 장면보고 끄라고 함.

두 번째 영상 - 6월 29일 A가 화장실에서 관계 영상 촬영하자고 하여 자신의 전면카메라로 녹화시작 하였지만 A의 출근이 임박해 1분 전후로 동영상 1회 촬영함. 영상에서 A는 나체였고 저는 상하의 속옷을 입은 모습이었음. 이때 본인은 영상촬영에 암묵적 동의함. 저장된 영상은 확인하지 못함.

7월 2일 카카오톡으로 영상 삭제 요청

8월 24일 만남 요청. 거부

* 사건 :

올해 5월 30일 저는 A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서핑강습을 신청하였고 A는 제가 속한 그룹의 서핑강사였습니다. 이 후 연인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6월 24일 제주도에 놀러 갔고 29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4일은 저 혼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잤고 25일과 26일은 A와 펜션에서 잤습니다. 27일 28일은 A의 오피스텔에서 잤습니다.

6월 28일 대략 오전 8시에 A와 성관계 하였습니다. A가 촬영하였던 시점이 성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간 선상에서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는 침대 위에서 머리맡 방향에 머리를 두고 천장을 보며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A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자세로 있었고 A와 마주하였습니다. A의 가슴, 목, 턱 부근을 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A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후면카메라는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A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세워 핸드폰의 높이가 저의 어깨-얼굴 정도 되게끔 핸드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A는 핸드폰의 좌우 위치가 저의 중앙-왼쪽 쇄골 정도 되게끔 핸드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A는 핸드폰의 앞뒤 위치가 저보다 60-80cm 앞에 있게끔 핸드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A는 핸드폰의 각도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끔 핸드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A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본 즉시 ‘하지마’라고 말하며 제 왼손을 들어 A의 핸드폰을 저의 왼쪽으로 밀쳤습니다. A는 핸드폰을 자신의 오른쪽 머리맡 부근에 내려놓았습니다.

관계 후 제가 ‘아까 찍은 거 보여줘’라고 말했고 A는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A가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재생하였고 같이 보았습니다. 첫 장면에 저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반신도 노출되었을 것 같은데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얼굴과 가슴입니다. 첫 장면에서 저는 아래를 보고 있었고 살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의 중앙-살짝 왼쪽 측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꺼줘’라고 말하였고 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A는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상에 있는 저를 보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웠습니다.

6월 29일 대략 오전 8시에 A는 저와 화장실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면카메라를 사용해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핸드폰을 변기 쪽 벽면의 수납공간에 세웠습니다. A는 변기 쪽 벽면의 반대쪽 샤워부스에서 나체로 샤워하였고 저는 상의와 하의 속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A의 출근이 임박하여 성관계 하지 않았고 영상은 1분 전후로 종료하였습니다. A는 저에게 영상을 종료해달라 하였고 저는 화면을 눌러 영상을 종료하였습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된 것 같습니다. 영상촬영 중 화면에서 제 얼굴과 속옷만 입은 신체, 나체의 A와 함께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저는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상촬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촬영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A가 원해서 따랐습니다. 해당 영상 또한 수사과정에서 삭제되기를 원합니다.

7월 2일 제가 A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찍은 거 보내주고 A의 폰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혹여 A가 자신의 폰에서 영상을 삭제 할 때 영상이 사라져서 아쉬워할까 봐 심리적으로 달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A는 카톡검열 할 수도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A는 제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영상을 지웠는지 지우지 않았는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연인관계가 나빠졌고 8월 24일에 저는 A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영상 삭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당분간 개인 사정으로 만날 수 없고 다음주는 되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현재 상황

A가 당장 영상을 유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간다면 저는 10년 뒤, 20년 뒤 계속해서 불안해 하며 걱정할 것 같습니다.

신고와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A를 만나서 영상을 삭제하고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A는 제가 영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A는 저를 만나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전화 혹은 메시지로 하기 원합니다. A와의 마지막 연락은 8월 25일 입니다. 저는 비대면 상태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의 대화에서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A는 전화로 할 수 없고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A는 영상의 존재를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제가 A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A는 첫 번째 영상만 염두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이야기를 꺼낸 것은 7월 2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A를 만나기 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계획

1 경찰신고 전 만나면 할 것

 –멋대로 촬영했다는 증언 녹음

 -영상삭제요청(사진첩, 휴지통, 보안폴더, 문자, SNS채팅방 공유흔적, 이메일, 구글드라이브, 네이버클라우드 등, 가능하다면 컴퓨터, usb 등 외장하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상 유포한적 있는지 묻기

2 모든 경우에서 경찰신고를 하려 합니다.

-A가 만남을 거부

-A와 만나서 영상을 지움

-만났는데 A가 이전에 영상을 지웠거나 현재 없다 함

* 질문

1 수사기관측에서 첫 번째 영상이 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까요

 -촬영 후 A와 같이 영상을 확인한 것과 사건 다음 날 두 번째 영상 촬영에 암묵적 동의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2 제가 A로부터 역고소나 무고를 당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일까요

우려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멋대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할 때

-A가 멋대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동영상을 발견했는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3 5년 전 제가 단순폭행 피해자로 경찰신고 하였고 가해자와 합의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강간 피해자로 경찰신고 하였고 사건은 검찰송치 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저의 과거 사건들이 앞으로의 수사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걱정됩니다.

4 A가 경찰신고 전 만남을 거부한다면 전화나 메시지로 영상 삭제를 요청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함언 후 경찰신고 해야 할까요

5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신고하여 혐의를 인정받은 경우, 제가 상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송치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나요.

**<상해죄 혹은 과실치상죄>**

가해자 : 전남자친구 A

일시 : 2023.08.05 – 2023.08.06

장소 : 휴가지 에어비앤비

사건 요약 :

6월부터 A는 오랜 기간 피곤하다고 말함.

7월 8일 A는 코로나에 감염됨.

7월 19일 전부터 A는 입술에 수포가 생김.

7월 31일 본인이 받은 성병검사에서 검출된 항목 없음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A와 3회 성관계 함.

8월 7일 본인은 배뇨 시 불편감을 느껴 성병검사 함.

8월 10일 hsv2 감염을 확인함. A에게 감염사실을 알림. A는 이전에 HSV2에 감염되었던 적 있는지 없는지 말하지 않음.

* 사건 :

6월부터 A는 자신이 피곤함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6월 30일 ‘좀 잡니다. 너무피곤해요’, 7월2일 ‘피곤해졸려추워’, 7월5일’일정소화만으로도죽을거같다’라고 저에게 카톡하였습니다.

7월 8일에 A는 감기에 걸렸고 며칠이 지난 후 코로나임을 알았습니다. A는 13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로한 것과 면역력이 약해졌음을 인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7월 19일 저와의 통화에서 입술에 병이 심해 아프다고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발병은 19일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31일 본인이 받은 성병검사에서 정상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클라미디아,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에 대해 약물치료 하였고 재검사 받은 것이었습니다. 7월 1일에 본인에게서 클라미디아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A에게 알렸습니다. A는 일정이 바빠서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 받아 일주일동안 항생제 치료한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후 A가 재검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7일에 본인은 성병검사 받았습니다. 클라미디아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전에도 해당 병력은 없습니다. A에게 클라미디아를 옮았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는 균으로 이것으로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8월 4일 제가 A를 만났을 때 A는 아직 입술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가 피곤해서 입병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8월 5일 오전2시, 8월 5일 오전9시, 8월 6일 오전7시 총3회 A와 성관계 하였습니다. 입술에 수포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8월5일 오전2시 관계 시, A는 삽입 전 콘돔을 착용하였습니다. 관계 중 제가 ‘쓸려서 아파’라고 하였고 A는 ‘그럼 너가 벗겨’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 양 손으로 콘돔을 벗겨 오른편 바닥에 두었습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직접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간접조명으로는 작은 트리용 장식전구 여러 개가 벽면 가를 따라 침대 맞은편 바닥에 ‘ㄱ’자로 놓여있었는데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왼편에는 낮은 조명등이 한 개 있었고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A의 성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A는 사정 전에 ‘싸고나서 빨아줄거야?’라고 물었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5일 오전 9시 관계 시 A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중 A는 ‘빨아준다면서 왜 안빨아줘’라고 말했습니다. 실내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환하였습니다. 직접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A의 성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관계 후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창문을 그림액자로 가리고 블라인드커튼을 내렸습니다.

8월6일 오전7시 관계 시 A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A에게 ‘난간에 기대어 서봐’라고 하였고 A가 기대어 섰습니다. 실내는 창문을 가려놓아 어두운 편이었고 직접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간접조명은 트리용 장식전구가 켜져 있었고 침대 왼편에 낮은 조명등은 꺼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A에게 구강성교 하였고 A의 생식기에서 포진과 홍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삽입하여 성교하였고 관계를 마친 후 저와 A는 샤워하였습니다. A는 샤워 시 자신의 음낭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A에게 ‘아파?’라고 물었고 A는 ‘쓸렸나봐. 빨개’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평소 저와의 성관계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가 클라미디아를 염두에 두고 콘돔을 착용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A의 ‘그럼 너가 벗겨’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면역력 저하로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병이 옮았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언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A의 콘돔을 벗긴 것은 전염가능성에 대한 동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콘돔의 고무재질로 인한 마찰 때문에 생기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HSV2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A의 입술에 수포가 나고 면역력이 낮다는 것은 알지만 HSV2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미디아는 재감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미디아는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능하기에 재감염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A에게 구강성교 하였을 때 아파하지 않았고 A의 생식기에서 포진과 홍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HSV2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면 도드라져서 성기를 만지고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발인 경우는 보통 3~7일 동안 지속되고 첫 감염보다 증상이 경미하고 지속기간이 짧은 편 입니다. 성기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눈의 띄는 병변을 일으키지 않고 바이러스를 피부나 점막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저는 A가 HSV2 과거병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합니다. 저는 A가 자신이 HSV2 보균자임을 알고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 했다고 생각합니다. A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HSV2 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후 샤워 시 제가 ‘아파?’라고 물었고 A는 ‘쓸렸나봐. 빨개’라고 답했습니다. 통증과 홍반은 HSV2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전구증상에서 병변을 일으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8월 7일 저는 배뇨 시 불편감을 느껴 성병검사 하였습니다.

8월 10일 hsv2 감염을 확인하였고 A에게 감염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습니다. A는 ‘나도오늘갓다와야겟다..나는 저번에 클라미디아만얘기햇엇는데’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전에 HSV2에 감염되었던 적 있는지 없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상황

HSV2는 완치 불가하고 평생에 걸쳐 예방과 재발에 신경 써야 하는 질병입니다. 앞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을 꾸려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는 제게 큰 고통입니다.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우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감염된 사람의 70%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흘림을 통해 3일~6일에 한 번 꼴로 전염 가능한 양의 바이러스를 분비한다는 논문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감염이 되면 증상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없을 때도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저의 HSV2 보균 사실을 알리게 될 때를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 계획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먼저 형사고발 후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후 상해죄에 대해 고소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하되 상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

1 해당 내용으로 상해죄 혹은 과실치상이 적용가능한가요

2 형사 고소시,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통해 성관계 전후 병원 간 사실여부, 어떤 약 탔는지, 이전에 어떤 성병 진단받았었는지 진료기록 열람할 수 있나요

3 가해자가 저에게 콘돔을 벗기라고 한 말과 제가 가해자의 콘돔을 벗긴 행동이 수사기관 측에서 전염가능성을 알고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4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5 앞으로의 성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성병감염성을 고지해야 좋을까요

6 자신이 성병 보균자임을 알지 못했을 때 주의의무 위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첨부: 본인 성병 검사 및 결과 타임라인

2023.01.17 검사

2023.01.20 결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 치료 후 재검사 받지 않음

2023.06.19 검사

2023.06.22 결과 나왔지만 내원하여 확인하라고 안내 받음

2023.07.01 내원하여 결과확인: 클라미디아,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2023.07.31 치료 후 재검사

2023.08.02 결과: 정상

2023.08.07 검사

2023.08.10 결과: HSV 2, 클라미디아,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는 질내 상주균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성적 접촉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클라미디아와 HSV2는 성적 접촉으로만 발병합니다. )